

# 漁協出資金 増資運動의 效果 및 影響

## On the Effects of the Fisheries Cooperatives Movement of Increasing Capital stock.

玉 珍 榮

Jin—Yeong Ok

### 序 言

現在 水協中央會에서는 水協長期發展計劃이라는 命題아래 1973年度를 基準年度로 하여 1981年度の 將來를 내다보는 靑寫眞을 펼쳐 놓고 漁協을 通하여 全國 系統組織의 底邊擴大 構築에 매진하고 있다.

그 中 漁協의 自体資本을 內實化하고 組合이 對外資金에 依存하는 不合理點에서 脫皮하여 完全 自立化할 수 있는 先行條件이 漁協出資金의 増資에 있음을 指摘하여 이 運動을 通한 年次的인 計劃을 樹立하고 있다. 따라서 本論稿에서는 먼저 1980年代를 向한 우리나라 經濟發展計劃의 長期的方向을 暫時 想起하면서 本運動의 效果와 影響에 對해서 記述할가 한다.

### 韓國經濟의 長期展望과 水產經濟

1980年代의 韓國經濟는 潤澤한 國民生活을 營爲하기 위한 基本理念 아래서 1人當 GNP 1,000弗과 年平均 11%의 高度成長을 이룸으로써 上位中進國圈에 跳躍할 수 있는 所得水準에 到達하게 될 것이며 또한 100億弗 輸出과 360億원의 海外借款으로 重工業의 比重을 漸高시킴으로써 雇傭増大를 통한 失業率의 漸次的 低下와 安定된 國民生活을 期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經濟構造의 變化와 發展過程에 따라 水產分野에 있어서도 長期發展方案이 同時에 樹立되고 있을 뿐 아니라 特히 중요한 새 漁村建設이라는 沿近海 漁民에 對한 80年代의 未來像이 水協中央會의 長期發展計劃을 通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漁村近代化를 위하여 極 鼓舞的인 示圖라 하지 않을 수 없다.

豊饒한 새 漁村建設을 通한 1980年度의 水產業의 概況을 잠시 살펴보면 漁業所得이 크게 增加하게 될 것이며 生産 및 輸出의 劃期的인 成長과 流通加工施設의 近代化 漁船勢力의 大型化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있다.

다시 말해서 漁業 所得의 增加에 있어서는 沿近海 1人當 所得이 72年度의 63,000원에서 81年度에는 267,000원으로 增加됨으로써 産業間의 所得格差를 줄일 것이며, 또한 生産 및

## 수 산 경 영 론 집

輸出에 있어서는 72年度 1,343,000%에서 80年代에는 3,714,000%으로 우리 나라가 世界第7位の 水産物 生産國으로 變貌하게 되고 水産物 輸出高는 153,000,000弗에서 934,000,000원으로 增加하여 世界 第1位の 水産物 輸出國으로 飛躍하게 될 것이다.

그外 流通加工施設의 近代化는 水産物 共販場과 直賣場의 近代化로 流通効率性を 提高시키고 冷凍加工施設의 擴充으로 水産物의 商品性を 向上케 할 것이며 漁船勢力도 크게 增加되어 72年度의 451,000G/T에서 80年代에는 1,215,000G/T으로 增大되어 2.8倍의 增産을 통한 生産性的 向上을 期待하고 있다.

### 漁協自立化 計劃과 出資制度의 改善

以上과 같이 世界에서 上位圈內에 들어가는 水産韓國으로서의 躍進基盤을 確固히 構築하는 政府方針에 並行해서 水協에서는 豐饒한 새漁村建設을 實現하기 위한 自体 長期發展計劃을 樹立하고 있다.

이 目標는 漁民所得의 極大化로 豐饒한 새漁村의 建設과 漁村協同組織의 完全自立化로 새마을運動을 內實化하고 水産物의 生産 流通의 革新으로 國民生活向上에 寄與하는 長期的 方向에서의 總量的 構想이다.

특히 水協의 長期發展計劃에 隨伴되는 여러 問題 가운데서도 水協의 系統組織體인 漁業協同組合의 完全 自立化를 推進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漁協의 出資金增資運動이 先行 條件으로 頭顛되고 있으며, 漁協의 自己資本의 內實化가 必然的으로 要求되고 있는 것이다.

水協의 漁協自立化의 推進方向을 보면 첫째 漁協이 自己資金의 造成擴大와 造成된 自己資金을 바탕으로 收益性事業을 開發하여 漁協의 自立 基盤을 確立하는데 있고, 둘째 全 漁協을 發展段階別로 重點的으로 이를 育成하여 漁協의 自立化를 早期에 達成하고, 셋째 中央會業務는 段階的으로 漁協에 移管하여 그야말로 綜合漁協으로서의 機能을 強化하여 經營의 合理化로 組合員에 對한 奉仕原價를 節減하는데 두고 있다.

現行 出資制度를 볼것 같으면 組合經營이 出資金を 바탕으로 成立될 수 있는 經營으로서는 不合理하고 脆弱的인 面을 免치 못하는 實情으로 ① 組合員 1인이 出資할 수 있는 金額이 現實的으로 少額인 것은 勿論, ② 平均 出資座數 亦是 水協法에서 上限線이 規制되고 있어서 實質的으로 漁協이 組合員의 出資金에 依하여 收益性事業을 營爲하기에는 現實성이 희박하다고 할 것이다.

水協法에 依하면 組合員은 出資 1座以上을 갖어야 하나 出資座數의 最高限度는 平均座數의 2倍를 넘지아니 하는 限度로 規制되고 있고, 또한 出資 1座의 金額도 全組合員이 同一하도록 規定되고 있다는 特徵이다.

그리하여 既定 出資額이 地區別漁協은 組合員 1人當 1,000원, 業種別 組合은 1人當 10,000

漁協出資金 増資運動의 効果 및 影響

원으로 制度化되고 있었으나 73年度 부터는 組合員 1人當 出資座數를 5座로 定하고 74年부터 81年度까지는 每年 5座以上을 増資키로 하고 한 것이 水協의 漁協増資計劃內容이다.

増資의 目的과 増資計劃

그러면 水協増資運動의 目的이 漁協이 自己資金의 充實을 期하고 收益의 事業의 開發에 있다 할 것이나 窮極의 으로는 80年代에 있어서 모든 傘下 漁協團體가 他人 資本에 依存하지 않은 完全自立組合으로서의 位置를 굳히고 나아가서는 組合의 對內 對外的 信用度를 提高시킴에 있다.

이와 같이 増資를 통한 漁協의 自立을 바탕으로 해서 組合自營事業의 擴大와 圓滑한 營漁資金의 回轉을 期하게 됨에 따라 組合은 組合員에 對한 參與意識이 提高되는 그야말로 自發的 協同精神의 理念이 싹트게 되는 큰 影響力을 揮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増資計劃初年度인 73年度의 計劃과 實績을 分析해 보면 表 1과 같이 當初 目標額 567,416千원에서 451,541千원의 實績을 나타내고 있어 이 金額은 當初目標額의 79%를 示顯함으로써 前年度까지의 既出資된 金額인 142,354千원을 合하여 合計 593,895千원의 漁協出資金を 保有하고 있는 計算이 된다.

〈表. 1〉 73年度 増資 實績 (單位: 1,000원)

區 分	組合員數	73年 増資			既 出 資 額	計
		目 標	實 績	%		
地區別 漁協	121,424名	485,696	410,213	84%	121,424	531,637
業種別 漁協	2,034名	81,360	40,718	50%	20,340	61,058
製造業 漁協	59名	2,360	610	26%	590	1,200
計	123,517名	567,416	451,541	79%	142,354	593,895

(資料: 水協中央會)

그러므로 最終 目標年度의 増資長期計劃을 分析해 볼때 1981年度의 増資造成額은 58,400百萬元에 達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表. 2〉 年度別 増資造成金額 (單位: 百萬元)

區 分	72~73년	74년	75년	76년	77~81년
地區別 漁協	539	1,165	3,024	5,544	50,460
業種別 漁協	64	169	480	880	8,000
計	603	1,334	3,504	6,424	58,400

또한 이러한 増資金의 運用方案에 따르면 漁業生産 增大를 위한 生産資金으로 組合員의